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개정 조례 (안)

의안 번호	415
----------	-----

제출년월일: 1994. 12.

제 출 자: 충청북도지사

○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청주신산업기술도시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하였던바,
- 건설부 승인 사항(청주과학 산업 지방공업단지)과 내무부 승인사항(청주신산업기술 도시)의 명칭이 상이하고 복잡하여 주민과 관련 공무원까지도 혼동을 하여 명칭 개정을 원하고 있고,
- 청주라는 명칭사용으로 인하여 청주시 산하사업소로 알게하는등 대외기관과의 업무 추진에 애로가 있어 우리도의 고유명칭을 사용하여 사업주체를 쉽게 인지함으로써 업무추진에 원함을 기하고,
- 과학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자문을 위한 건설 협의회 운영규정을 신설하여 지역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코저 함과,
- 현재의 업무기능이 청주「테크노빌」 업무만 전담토록 되어있으나 충청북도의 과학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주도하는 전담기구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능을 조정하면서,
- 기구 존치기한을 '94년말에서 1996년까지로 연장 하여줄것을 내무부에 요청하여 내무부 장관의승인(지기 12200-789호 1994. 12. 8)을 받았기에 개정코저 함.

○ 주요 골 자

조례명이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로 된것을

' 충청북도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설치조례'로 하고.

· 과학단지의 건설 전담기구 명칭도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에서
'충청북도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으로 개칭하며.

· 업무의 기능도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사업'에서
'과학산업단지건설사업'으로 하고.

· 건설협의회 운영규정 신설과
운영위원의 회의 참석 실비보상 지급 규정을 명문화하며.

· 부칙의 유효기한도 '1994년 12월 31까지'를
'1996년 12월 31까지'로 함.

○ 관련 법령

·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별첨)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내 과학산업단지의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기획단은 충청북도 청내에 둔다.

제3조(업무) 기획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과학산업단지 건설사업의 종합기획및 조정
2. 유치기업 선정, 협약, 시설지도, 지원
3. 각종 사업추진협의기구 조직운영
4. 토지거래 관리 및 국공유재산 관리
5. 토지감정, 보상 및 주민이주 종합대책 수립집행
6. 단지조성사업 추진 및 지구내 공사설계 시공 지도감독
7. 단지조성에 따른 각종 용역사업 추진 및 사업시행자 지정
8. 단지분양 공급 및 용지관리 대책
9. 단지내 공공시설 및 부대시설 시공관리
10. 도시시설의 기본협의서 작성운영
11. 각종 대형사업의 홍보 및 연구개발 성과관리
12. 기타 단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단장) ① 기획단에 단장을 두며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단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기획단에 단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직급별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건설추진협의회) ① 충청북도내 과학산업단지의 건설사업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과학산업단지건설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는 위원장은 충청북도 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단장으로 한다.
 - ③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지역 실정에 밝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덕망이 있는 인사
 - 2. 지역개발 및 도시건설과 과학산업단지건설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인사
 - 3. 과학산업단지 건설과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및 행정 공무원
 -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단의 개발담당관으로 한다.
 -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 ⑥ 위원중 도의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 범위내에서
충청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내지 제5조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1996년 12월31일 이를 폐지한다.